

2016년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응시번호

성명

<제 1 문>

乙은 2013. 10. 1. 甲에게 자기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2014. 1. 3.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였고, 丙은 2015. 1. 5.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2015. 2. 2. 乙과 丙을 상대로 ① 乙에게는 2013.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丙에게는 乙과 丙 사이의 2014. 1. 3. 매매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에서 乙은 직접 소장부분을 송달 받은 후 적법한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도 계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한편, 丙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乙을 상대로 X건물에 관하여 2014. 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처럼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甲은 乙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어 甲의 乙과 丙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라고 주장하였고, 위 주장 중 丙의 乙에 대한 승소판결의 확정사실은 증거를 통하여 모두 증명되었다(아래 문제는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며, 각 문제는 독립된 것임).

1. 심리 결과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체결 사실 및 乙과 丙 사이의 매매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 증명된 경우 법원은 甲의 乙과 丙에 대한 청구에 대해 각각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논거를 들어 서술하시오. (20점)
2. 이 사건 소송에서 甲은 乙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그 후 제1심 법원이 甲의 丙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해 甲만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심리 결과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만, 甲의 丙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을 때 항소심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 논거를 들어 서술하시오. (15점)
3. 이 사건 소송에서 甲이 丙에 대하여 청구기각의 패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丙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여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甲이 丁을 상대로 “乙과 丙 사이의 2014. 1. 3. 매매계약은 乙의 배임행위에 丙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고, 따라서 丙,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대위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심리 결과 丙의 배임행위 적극 가담 사실이 증명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논거를 들어 서술하시오. (15점)

제 2 문

〈제2문의 1〉

甲은 乙과 乙 소유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甲은 乙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甲은 乙에게 잔금을 지급하겠으니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乙은 甲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甲은 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乙은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항변하였다. 乙은 또한 만약 위 해제가 적법하지 않을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

1. 제1심 법원은 위 매매계약이 甲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甲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면서 乙의 반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제1심 법원의 판결은 적법한가? (10점)
2. 위 1.에서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甲만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심리 결과 乙의 해제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 없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5점)

〈제2문의 2〉

甲은 丙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아들 乙의 동의 없이 乙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乙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丙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丙의 소장부분이 甲과 乙이 함께 살고 있는 주소지로 송달되자, 甲은 乙의 동거인으로서 위 소장부분을 수령한 다음 乙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다. 법원은 2015. 4. 1. 丙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아래 문제는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며, 각 문제는 독립된 것임).

1. 甲은 위 판결정본을 주소지에서 송달받은 다음 乙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그 후 항소기간이 도과되자 丙은 2015. 5. 1. 위 판결에 기해 乙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乙은 2015. 6. 10. 丙의 강제경매신청 사실을 알고서 甲에게 문의한 결과, 甲이 소장부분과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등을 알게 되었다. 乙이 위 판결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10점)
2. 우편집배원 丁은 2015. 4. 10. 甲이 우체국에 들어오자 甲이 乙의 동거인이라는 이유로 판결정본을 甲에게 송달하였고 甲은 아무런 이의 없이 판결정본을 수령하였다. 乙은 2015. 6. 10. 甲이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6. 6. 10. 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乙의 항소는 적법한가? (1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

